



# COVID-19산업별 지침:호텔, 숙박 및 단기임대

# 2020년 7월 29일

모든 지침은 100,000 명당 증례를 포함한 현지 역학 데이터 검토 후 카운티 보건 담당관의 승인과 검사 양성 비율, 의료서비스 급증, 취약 인구, 접촉 추적,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대비에 따라서만시행해야 합니다.



#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직원(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의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

이 문서는 직원과 고객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원을 위해 호텔과 숙박 및 단기 임대업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대규모 회의 장소, 연회홀 또는 컨벤션 센터를 갖춘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 업장은 해당 유형의 시설에 대한 개편된 방식의 또는 완전한 방식의 운영 허용이 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자, 공동 사용 운영자 및 기타 임대 유닛 소유자 및 운영자는 비점유된 유닛만 대여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점유된 거주지 내에 객실 또는 공간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동안 대여되거나 별도의 외부 출입구가 있어서 공유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점유되지 않은 주택이나 유닛은 비점유된 유닛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개편된 방식으로 또는 완전한 방식으로 다시 운영하도록 허용된 경우 운영자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침을 코로나 19 복구로드맵 웹사이트에서 참고해야 합니다. 식사 및 숙박 시설, 바, 피트니스 센터, 가족 오락 시설, 미장원, 소매점 운영 등이 포함된 호텔 및 숙박 운영에 관한 추가 지침은 코로나 19 복구로드맵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1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OSHA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웹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보호를 위한 준수 요건에 대한 캘리포니아/OSHA 지침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지침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DC는 대상 기업 및 고용주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u>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u>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모든 공간 또는 폐쇄된 구역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 가족이거나 동거인 제외)이 같이 있게 되는 경우 또는,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u>지침</u>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는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 속의 사람이 <u>지침</u>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시설마다 업무 공간별로 COVID-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시설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이나 손님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의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 및 문서를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한 결함을 수정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u>CDPH 지침</u>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u>COVID-19</u>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u>CDC 지침</u>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CDC가 언급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 o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o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o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o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u>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u>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COVID-19 관련 병가 및</u> 산재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 및 주지사 <u>행정 명령 N-51-20</u>에 의거한 근로자의 병가 권리, 그리고 주지사 <u>행정 명령 N-62-20에 의거하여 해당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u>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의 업무 연관성 추정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근무를 시작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직원에게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심사를 제공합니다.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u>CDC 지침</u>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 하우스키핑은 고객이 객실에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고객의 개인 소지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우스키퍼를 교육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창문을 열어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하도록 하우스키퍼를 교육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객과의 접촉, 객실 청소, 우편물 개봉 또는 기타 일상 물품을 만진 후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적합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대리 주차 서비스 운전사, 수하물 처리자 및 하우스키퍼는 근무 중에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적합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수하물 전달은 고객이 객실에 없을 때 수행되어야 합니다.
-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 운영 시 고객이 도착 전에 해당 시설의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는 호텔 또는 숙박 운영자가 증상이 있는 방문자가 포함된 그룹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새로운 체크인절차,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 및 숙박 시설, 편의시설 및 체크인/등록 장소와 같은 공용구역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일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객과 방문자에게는 도착 시 체온 및/또는 선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얼굴 가리개(마스크) 없이 도착한 고객에게는 가리개(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법과 해당 건물 전체에 걸쳐 적용 중인 현 시점의 물리적 거리두기 실행 방안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눈에 띄도록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객에게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소지하도록 사전에 통보하고, 가능할 경우 얼굴 가리개(마스크) 없이 도착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습니다.



# 청소 및 소독 절차

- 호텔 로비, 프런트 데스크 체크인 카운터, 벨 데스크, 휴식 공간 및 식사 구역, 탈의실, 하역장, 주방 및 계단, 계단통, 핸드레일과 엘리베이터 계기판을 포함한 진출입구 영역과 같이 왕래가 잦은 구역에 대해 철저한 세정을 수행합니다.
- 도어 핸들, 자동판매기 및 얼음기계, 조명 스위치, 전화기, 세탁기 및 건조기 도어와 계기판, 수하물 카트, 셔틀 도어 핸들, 화장실 및 손세정 시설을 포함해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밤낮으로 소독합니다. 매일 수행하는 객실 청소 시 표면을 소독합니다. 소독 전에 더러운 물품을 먼저 청소합니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동안 할당되어야 합니다.
- 손 세정제 및 위생 물수건을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워크스테이션, 데스크 및 헬프 카운터에 비치하고, 고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용 손소독제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고용주는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록 목록에 나와 있는 COVID-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권장하는 <u>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u> 따르고 적절히 환기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u>레지오넬라증</u>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의 시설 폐쇄 후에는 모든 급수 설비 및 장치(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u>조치를 취하십시오</u>.
- 가능한 경우 전화, 태블릿, 노트북, 책상, 펜, 기타 작업 용품 또는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용 도구와 장비는 각교대 근무 도중과 교대 근무 전후 또는 해당 장비가 새로운 근로자에게 이전될 경우 항상 세정 및 소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화, 라디오, 컴퓨터 및 기타 통신 장치, 결제 단말기, 주방 도구, 엔지니어링 도구, 안전 버튼, 폴리오, 하우스키핑카트 및 청소 장비, 열쇠, 시간기록계 및 기타 모든 직접 접촉 품목이 포함됩니다.
- 사무실 팬트리에서 공용 식음료 장비(공용 커피 머신 포함)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손으로 작동하는 얼음기계의 사용을 중지하고 핸즈프리 기계를 사용합니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건물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객실과 기타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 적용을 검토합니다.



# 호텔 운영을 위한 추가 세정 및 소독 프로토콜

- 잡지, 메뉴, 현지 명소 정보, 쿠폰 등 모든 재사용이 가능한 부대 물품은 객실에서 제거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일회용 부대 물품으로 제공되거나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 냄비, 팬, 주방용품 등의 주방 물품은 각 투숙 사이에 세척해야 합니다. 캐비닛 내 및 다른 객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식기는 세척해야 합니다. 고객 도착 시 적절한 주방용 세제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스폰지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 주방용품을 일회용 식기류로 교체할 것을 검토합니다.
- 냉장고 선반, 오븐 스토브탑, 커피 메이커, 토스터, 팬트리 선반 및 기타 영역 등 모든 가전제품과 주방 영역을 적절히 세정합니다.
- 사용한 리넨은 일회용 밀봉 백에 넣어 객실에서 가져와 운반합니다. 각 고객의 투숙 종료 시 모든 타월과 리넨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을 가져와 세정해야 합니다. 운송 중 과도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물품은 객실 내에서 백에 넣어야 합니다. 모든 침대 리넨 및 세탁물은 고온에서 세탁하고 <u>CDC</u>지침에 따라 세정해야 합니다.
- 가능할 경우 고객 퇴실 후 24~72시간 동안 객실을 비워둘 것을 검토합니다.
- COVID-19로 추정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 객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케이스가 확정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 객실은 영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양성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객실은 CDC 지침에 따른 강화된 소독 프로토콜을 거친 후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주요 고객 및 근로자 출입구와 진입로, 리셉션 구역, 호텔 로비, 레스토랑 입구, 회의 및 컨벤션 공간, 엘리베이터 대기 공간, 수영장, 살롱 및 헬스장 등과 같은 접촉 구역에 비접촉식 손 세정제 디스펜서를 설치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근로자, 고객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파티션이나 시각적 표시(예. 근로자 및/또는 고객이 서야 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바닥 마킹이나 표식)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고객이나 근로자가 줄을 서는 모든 구역은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체크인, 체크아웃, 엘리베이터 로비, 커피숍과 식당 및 택시와 공유차량용 대기줄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위해 근로자 휴식 공간, 유니폼 관리 구역, 교육실, 공유 사무실 공간, 근로자 서비스 창(은행 창구 스타일 창) 및 기타 고밀도 영역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근무 전 회의는 가상으로 또는 근로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구역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대규모 부서는 직원 도착 시간에 시차를 둬 건물 뒷편 복도와 서비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근로자가 고객 및 타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 변경 옵션(예. 컨시어지 데스크 근무 대신 재고 관리 또는 전화 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처리) 요청 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장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들을 분리하고 휴식 중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차양과 좌석 배치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 사무공간, 큐비클, 로비, 프런트 데스크 체크인 구역, 비즈니스 센터, 컨시어지 서비스 구역 및 기타 공간을 다시 디자인해 업무 공간과 객실 숙박 시설에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근로자들이 화장실과 복도와 같이 왕래가 많은 구역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도보 이동 영역에 단방향의 복도와 통로를 설정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 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직원이 물리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는 악수 및 그와 유사한 인사 방식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물리적인 실제 사무실에 물품 배달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펜과 클립보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 호텔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고객은 가능한 경우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개방된 문을 통해 또는 자주 손을 씻거나 적절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문을 통해 입장해야 합니다.
- 로비 안내자를 포함해 고객이 서로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을 건물 외부 대기열에 세우는 피크 시간 대기 절차를 실시합니다.
- 직원이 차량 또는 택시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픽업 및 전달 프로토콜을 사용해 객실 서비스,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및 편의물품 전달을 제공합니다.
- 골프 코스가 있는 호텔과 숙박 시설 운영 시 직계 가족 및 동거인이 아닐 경우 카트당 한 명의 플레이어만 허용해야 하며, 티 타임 간격을 늘리고 골프 코스의 재개장이 허용된 경우에만 개장해야 합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추가 지침은 COVID-19 회복 로드맵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임대 시설에 관한 추가 고려사항

- 부동산 관리자, 공동 사용 운영자 및 기타 임대 유닛 소유자 및 운영자는 비점유된 유닛만 대여해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점유된 거주지 내에 객실 또는 공간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동안 대여되거나 별도의 외부 출입구가 있어서 공유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점유되지 않은 주택이나 유닛은 비점유된 유닛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거주자, 임차인 및 다른 가구의 손님들이 주방 가전제품, 세탁시설 등을 공유할 경우 적절한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임시 공유 거주 형태의 경우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어렵습니다.
- 시설 관리자, 공동사용 운영자 및 기타 임대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는 가능한 경우 셀프 또는 원격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키패드가 있는 자물쇠 상자나 스마트 잠금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적절한 셀프 체크인 지침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 가능한 경우 표준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을 실시하고 조기 도착이나 늦은 출발을 제한함으로써 고객 투숙 사이에 실시하는 강화된 세정 프로세스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적절한 얼굴 가리개(마스크) 사용법과 해당 건물 전체에 걸쳐 적용 중인 현 시점의 물리적 거리두기 실행 방안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건물 입구와 기타 중요

위치에 눈에 띄도록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투숙 후 임대 시설을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침대 레일, 테이블, TV 리모콘, 헤드보드, 카운터탑, 주방가전제품, 냉장고 손잡이, 스토브 손잡이, 거울 및 기타 품목 등 접촉이 잦은 모든 영역을 닦고 세정하고 소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임대 시설에서 남은 재활용, 쓰레기 및 폐품 모두를 제거합니다. 쓰레기 통을 일렬로 세우면 티슈 및 기타 폐기물 처리가 쉬워집니다. 이전 고객이 냉장고, 냉동고, 팬트리에 남긴 모든 음식물을 비웁니다.
- 모든 리넨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품목까지 포함해 각 투숙 사이에 가져와 세탁해야 합니다. 임대 시설 내 침구, 타월 또는 기타 세탁 품목을 세척할 경우, 더러운 세탁물을 취급할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각각의 사용 후 폐기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임대 시설에 여분의 리넨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 더러운 세탁물을 흔들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분산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세탁물을 세탁합니다. 품목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가장 따뜻한 물 설정을 사용해 세탁물을 세탁한 후 완전히 말립니다. 표면에 관한 위의 지침에 따라 세탁물 바구니를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사용 후에 치울 수 있는 일회용 또는 개별 사용 후세탁이 가능한 백 라이너 사용을 검토합니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든 부드러운 표면을 적절하게 세정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먼지와 때를 제거한 후 소재에 적합한 세정제로 세척합니다. 가능하다면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탁기로 세척합니다.
- 냄비, 팬, 주방용품 등의 주방 물품은 각 투숙 사이에 세척해야 합니다. 캐비닛 내 및 다른 객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식기는 세척해야 합니다. 고객 도착 시 적절한 주방용 세제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스폰지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 주방용품을 일회용 식기류로 교체할 것을 검토합니다.
- 각 투숙 후, 냉장고 선반, 오븐 스토브탑, 커피 메이커, 토스터, 팬트리 선반 및 기타 영역 등 모든 가전제품과 주방 영역을 적절히 세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화장실 변기, 샤워기, 욕조, 세면대, 캐비닛 및 선반 등은 EPA가 COVID-19에 대해 승인한 다용도 세정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거울과 유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닦아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진공청소 및/또는 대걸레로 청소해야 합니다.
- 임대 시설에 추가적인 손비누, 종이 타월, 화장지, 소독 스프레이 또는 소독용 물수건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외부 또는 전문 청소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세척 및 소독 표준에 대한 요구와

계획을 전달하고, 계약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투숙 전 및 투숙 기간 동안, 내용 게시와 건물 정보 책자를 통해 시행 중인 세정 및 안전 조치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고객이 모든 체크인 및 체크아웃 프로토콜과 업데이트된 건물 또는 편의시설 정책(예. 아파트 건물 서비스 변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서비스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 시설이 점유되어 있는 동안에는 비필수적인 유지보수를 연기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비상 또는 긴급한 문제만 처리합니다.
- 모든 HVAC/공기 필터가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교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여과 효율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사용한 공기 필터의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 최대한 조심해서 제거한 후 폐기합니다.
- 고객이 퇴실한 후 가능하다면 24~72시간 동안 임대 시설을 비워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 컨퍼런스, 회의 등 대규모 모임용 임대 시설은 해당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열면 안됩니다.



#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 추가 고려 사항

- 수영장과 스플래시 패드가 갖춰진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 운영은 <u>CDC 지침</u>에 따라 방문자 사용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적절히 세정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워터 슬라이드, 워터 라이드 또는 기타 물놀이 시설이 있는 수영장을 보유한 호텔 또는 숙박 운영은 해당 시설이 재개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영장 자체는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우나, 증기탕 및 온수 욕조는 해당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폐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실내 수영장의 경우, CDPH 지침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물이나 샤워 구역 밖에서는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마스크)는 젖은 상태에서 숨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얼굴 가리개(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치워 놓아 다른 사람이 실수로 만지거나 집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실외 수영장의 경우, CDPH 지침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물 밖에서 항상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적절한 소독제 수준(1-10ppm 유리염소 또는 3-8ppm 브로민)과 pH(7.2-8)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물놀이 시설을 설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와 상의하여 해당 물놀이 시설에 최적인 <u>EPA가 승인한 목록 N 소독제</u>를 결정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안전하게 제품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해 소독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및 보관을 확인합니다.
-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가구 및 장비(예. 라운지 의자)를 이미 세척 및 소독을 완료된 가구와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아직 세척과 소독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했던 장비용 컨테이너와 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장비용 컨테이너에 라벨을 붙입니다.
-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타월과 의류를 세탁합니다. 적합한 한도 내에서 가장 따뜻한 물 온도를 사용한 후 해당 품목을 완전히 말립니다. 일회용 장갑으로 최대한 조심해서(흔들면 안 됨) 타월을 취급합니다.
- 물품, 특히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물품이나 얼굴에 접촉하는 물품(예. 고글, 노즈 클립, 스노클 등)의 경우,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가능하면 공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킥보드, 풀 누들 및 기타 부양 장치와 같은 고객용 장비를 시설에 충분히 갖추도록 합니다. 사용 후에는 항상 물품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실내 물놀이 시설의 경우 창문과 문을 열거나 선풍기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실외 공기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순환시킵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방문자 또는 수영

중인 사람에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창문과 문을 열면 안 됩니다.

- 데크 레이아웃과 수영장을 둘러싼 구역을 변경하여 서 있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라운지 의자를 없애거나 특정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막는 것도 포함됩니다.
- 물리적 표시나 가이드(예. 수영장 내 경계선 또는 데크 내 의자나 테이블)와 시각적 표시(예. 데크, 바닥 또는 인도 상의 테이프) 및 표식을 제공해 물 속과 바깥 모두에서 근로자, 방문자 및 수영하는 사람이 서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근로자와 고객이 상호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든 곳에 Plexiglas와 같은 불투과성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
-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을 위한 예약 시스템을 시행하거나 기타 다른 메커니즘 구현을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개별 왕복 수영을 위해 하나의 레인을 예약할 수 있게 하거나 개별 가족 사용을 위해 하프 레인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명구조 역할을 수행 중인 인명구조원은 손씻기, 천 얼굴 가리고의 사용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모니터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책임은 다른 근로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 물놀이 시설은 단체 모임을 조장하는 활동을 피해야 하며, 수상 피트니스 강습, 수영 강습, 수영팀 연습, 수영 대회, 수영장 파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모임 요건과 관련된 현지 정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CDC의 <u>모델 아쿠아틱 건강 코드(Model Aquatic Health Code)</u> 에는 공영 수영장에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up>1</sup>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u>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u> 및 <u>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u>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